

인천광역시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8. 19.

제출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시정시책에 대한 자문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대안 제시 갈등요인 해결 등 지역 원로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기능의 시민원로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원로회의는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(안 제2조)
- 나. 시민원로회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(안 제3조)
- 다. 원로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2회,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원로회의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는 자치행정과장, 서기는 자치행정담당사무관이 하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원로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

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정방향과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(이하“원로회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시장(이하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
2.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

제3조(구성 등) ① 원로회의는 의장,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의장의 직무)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, 원로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
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원로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원로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 등) ① 원로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, 서기는 자치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7조(의견청취 등) 원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 등) 원로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원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속기한)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

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관련법령	<p>□ 지방자치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2조(조례) :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 ○ 제116조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: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p>□ 지방자치법시행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: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○ 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: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없음”